

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통지)

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신: 유○정 귀하

예정된 처분의 제목		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취소				
당사자	성명(명칭)	유○정				
	주 소	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	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결격사유 발생 사실 확인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(공업경영 2급) 취소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	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,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[별표4]				
청문실시	기관명	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	부서명	서울남부고용센터 (직업능력개발팀)	담당자	이정현
	주 소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			전화번호	02-2639-2497
	일 시	2018년 5월 25일(금) 10:00		장 소	서울남부고용센터 2층 회의실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	서울남부지청 노동변호사		
		성 명		김윤정		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



< 청문시 유의사항 >

1.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.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3.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4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